

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 교부(징수금의 3%)		
사업비 (당해년도)	913,005천원	[국비]	[사비]913,005천원
		기타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주택정책실	공동주택지원과	김장수 2133-7130	강윤희 2133-7132	황수영 2133-7133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예산액 (A)	2023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913,005	(x-) 913,005	(x-) 0	(x-) 0
징수교부금	(x-) 913,005	(x-) 913,005	(x-) 0	(x-) 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
징수교부금	○ 징수교부금 30,433,466,730원*3%	= 913,005천원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
------	------------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

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 : 「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권한의 위임) 제2항
 -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1.1월 ~ 2021.12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
- 교부내용 :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%를 자치구청장에게 교부

추진경위

- 2021.1~12월 :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수납
- 2022.1~6월 : 2021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산
- 2023.3월말 :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교부(징수금 결산액의 3%)

2023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13,005	
자치구 세입계좌 파악	2023.02~2023.02		
학교용지부담금 입금조치	2023.03~2023.03	913,005	자치구 교부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20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747,773천원
2021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1,315,172천원
2022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845,164천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자치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욕 고취시켜 건설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0	(x-) 797,736	(x-) 0	(x-) 0	(x-) 797,736	(x-) 747,772	(x-) 0	(x-) 49,964
2021	(x-) 1,315,172	(x-) 0	(x-) 0	(x-) 1,315,172	(x-) 1,315,172	(x-) 0	(x-) 0